

## 부동산 소유자로부터의 통지: RSO

임차인님께,

산타아나시는 2021년 11월 19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이하 "RSO")를 제정했습니다. RSO는 시의 특정 주거용 임대 유닛 및 이동식 주택 공간에 대해 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지방법입니다.

RSO는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에 따라 1995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적용됩니다. 이동식 주택 공간에 대한 RSO는 소유권에 관계없이 1990년 이전에 설립된 이동식 주택 파크(mobile home parks)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RSO는 장기 임대(12개월 이상)가 있는 이동식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SO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의 80% 중 더 낮은 금액만큼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CPI의 변화가 마이너스이면 그 해에는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의 공정한 수익 청원(Fair Return Petition)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소유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3%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 대한 RSO 통지 요건

부동산 소유자는 임대차 시작일 또는 그 이전에 RSO의 존재 및 범위와 임대료를 허용 한도 이상으로 인상하기 위해 시에 제출한 모든 청원에 대해 임차인의 응답할 권리 대한 정보가 포함된 서면통지를 시에서 규정한 형식으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에게 통지가 제공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조건을 협상하는 데 사용한 언어(예: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임차인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상 통지 요건

부동산 소유자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허용된 임대료 인상액만큼 인상하기 전에 충분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을 위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통지 시간은 주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통지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시에 [rso@santa-ana.org](mailto:rso@santa-ana.org)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14) 667-2209 로 전화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시 웹사이트 [www.santa-ana.org/renterprotections](http://www.santa-ana.org/renterprotection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선택사항:

**본인은 RSO의 존재 및 범위와 임대료를 허용 한도 이상으로 인상하기 위해 시에 제출한 모든 청원에 대해 응답할 권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이 서면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서명

---

날짜

산타아나시 템플릿 통지  
2022년 1월 13일 개정